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총사업비·보상금총액·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호”를 “4호”로 한다.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 의무기간 등) ① (생략). 1~2. (생략) <u><신 설></u>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 의무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의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u>
3. <u>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u>	4.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공급추진본부 도심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388